



가업승계지원 관련 예규, 판례 검토

가업승계지원 관련 예규, 판례 검토

정엘의 가업승계연구소

김태양 지점장



III 가업승계지원 관련 예규, 판례 검토

1. 동업기업 (공동경영기업) 복수적용 불가
2. 업종변경의 한계
3. 후계자의 조기사망
4. 기타 (납세담보, 필요경비 특례)



1. 동업기업 (공동경영기업) 복수적용 불가

1- 1. 재산세과 - 467 (2011.10.07.)

1- 2. 실제 사례

- 2003년 설립 / 화장품제조업 / 3인 설립 / 현재 2인 동업

1- 3. 기업단위 → 기업 & 가족단위 의 제도적용



III 가업승계지원 관련 예규, 판례 검토

1- 1. 재산세과 - 467 (2011.10.07.)

상증 **공동경영을 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

재산세과-467 생산일자: 2011.10.07.

관련 주제어

[기초공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증여재산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요지

기업의 공동경영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공동경영자 일방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은 후 다른 공동경영자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 귀 질의 “1.3”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63, 2009.06.09, 재산세과-2081, 2008.08.01)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로서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해당 기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개정된 것)제30조의 6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갑과 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동일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받은 후 을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axlaw.nts.go.kr>)

III 가업승계지원 관련 예규, 판례 검토

1- 2. 실제 사례

업체명	(주) ** 코스메틱		소재지		인천광역시	
설립연도	2003 년		기업구분		중소기업	
업태	제조업		종목		화장품	
매출액	200 ~ 250 억원		당기순이익		15 ~ 20 억원	
주가총액	180 억원		매출구분		자체, OEM, 수출	
특이사항 (주주구성)	설립시		1차 동업해지		현재 (의결권 기준)	
	A (1951)	33.6%	A (1951)	33.6%	A (1951)	50.2%
	B (1956)	33.2%	B (1956)	33.2%	B (1956)	49.8%
	C (1956)	33.2%	자사주	33.2%	자사주	- %

III 가업승계지원 관련 예규, 판례 검토

1- 3. (제안) 기업단위 → 기업 & 가족단위 의 제도적용



2. 업종변경의 한계

2- 1. 상속 증여세과- 549 (2023.08.30.)

2- 2. 실제 사례

- 2001년 설립 / 건설업 , 제조업 / 5 ~ 7년 단위 낙찰

2- 3. 대분류 내 변경 → 대상업종 내 변경





2- 1. 상속 증여세과- 549 (2023.08.30.)

상증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 영위기간 계산

서면-2023-상속증여-1822 [상속증여세과-549] 생산일자 : 2023.08.30.

관련 주제어
[증여재산공제](#)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03.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 영위기간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III 가업승계지원 관련 예규, 판례 검토

2-2. 실제 사례

업체명	(주) ** 전력		소재지		경기도	
설립연도	2001 년		기업구분		중소기업	
업태	제조업, 건설업		종목		건설자재, 전문공사	
매출액	50 억 ~ 120 억원		당기순이익		10 억원	
주가총액	90 억원		매출구분		자재생산, 공사입찰	
특이사항 (평균 매출액)	2016 ~ 2018년		2019년 (낙찰)		2020 ~ 2023년	
	제조업	40 억	제조업	40 억	제조업	50 억원
	건설업	5 억	건설업	80 억	건설업	10 억원
	도소매	5 억	도소매	-	도소매	-

III 가업승계지원 관련 예규, 판례 검토

2- 3. (제안) 대분류 내 변경 → 대상업종 내 변경



3. 후계자의 조기사망

3- 1. 법령해석과 - 3057 (2019.11.22.)

3- 2. 상속인의 배우자의 대체경영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 제18조 3항 2호

3- 3. 후계자의 배우자를 통한 승계지원 유지





3- 1. 법령해석과 - 3057 (2019.11.22.)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48 [법령해석과-3057(2019.11.22.)] 생산일자 : 2019.11.22.

관련 주제어

[기초공제](#) [증여재산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주식을 상속받아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수증자가 상속령 § 15③(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신청의 경우와 같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을 보유한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수증자의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상속받아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에 대해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2. 배우자의 대체경영 인정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 15조)

제5절 상속공제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2. 4., 2010. 2. 18., 2013. 2. 15., 2014. 2. 21., 2016. 2. 5., 2017. 2. 7., 2018. 2. 13., 2019. 2. 12., 2022. 2. 15., 2023. 2. 28., 2024. 2. 29.>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기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기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기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기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III 가업승계지원 관련 예규, 판례 검토

3- 3. (제안) 후계자의 배우자를 통한 승계지원 유지



4. 기타 (납세담보 / 필요경비 특례)

4- 1.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

- 비상장주식의 담보력 불인정 ▶ 가업승계 증여특례 활용 저하

4- 2. 필요경비 특례

- 사실상 과세이연 ▶ 활용동기 저하 ▶ 사전 매각 도모

4- 1. 비상장주식의 납세담보 불인정 (조심- 2009- 서- 2692)

상증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상속세 연부연납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함.** (가각)

조심-2009-서-2692 귀속년도 : 2008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09.11.23.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물납](#) [연부연납](#)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담보의 종류](#)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기본법 제29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

요지

비상장주식은 「국세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납세담보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국세청장이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을 담보로 한 연부연납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4- 2. 필요경비 계산 특례 (소득세법 제97조의 2)

소득세법 [시행 2024.01.01.] [제19933호, 2023.12.31.] 일부개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다.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2.12.31>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nd of Document

- 감사합니다 -

